

의안번호	제 44 호
의결년월일	1997.

의결사항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7. 12. / .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4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7.12. /

제출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내무부로부터 한시지구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한시 기한연장 승인에 따라 '97년분 한시정원 감축등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.

2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(한시정원) 및 동규정 제21조(정원의 규정)
-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한시지구·정원연장증인서
(도행정 12200-866('97.11.20)호)

3. 주요골자

- 사업소 정원감축 : 3명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중 “62”를 “59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한시정원) 시본청 및 사업소 정원 502명중 한시정원 63명은 그 존속기한을 1999년 12월 31일로 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사천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시 본 청 : 443명 2. 의회사무국 : 18명 3. 직속 기관 : 138명 4. 사 업 소 : <u>62</u>명 5. 읍 면 등 : 351명	제2조(정원의 총수)..... 1. 2. 3. 4. <u>59</u> 5.